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
		배포일시	2019. 4. 19.(금) 총 2매(본문2)	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자	과장 윤진환, 사무관 정송이, 주무관 김교준 ☎ (044) 201-3835, 3838, 3839	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자동차 교환·환불제도에 현재 15개 제작사(25개 브랜드)가 참여를 결정하였습니다.

- 자동차 교환·환불제도 참여 제작사*는 금년 1월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, 현재 15개 제작사('18년 시장점유율의 약 98% 수준)가 참여를 결정하였으며, 제작사·브랜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*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에 따라 「자동차 교환·환불 중재규정」을 수락한 제작사

< 교환·환불제도 참여 및 예정 제작사(브랜드) 현황 >

구분	기 참여	참여 예정*
국내(5)	현대(제너시스), 기아, 쌍용, 르노삼성	한국GM
수입(10)	BMW(미니, 롤스로이스), 토요타(렉서스), 닛산(인피니티), 재규어랜드로버, 볼보, 혼다	벤츠, 포드(링컨), 아우디폭스바겐(벤틀리, 람보르기니), 캐딜락
계	10개사(16개 브랜드)	5개사(9개 브랜드)

* 국토부에 중재규정 수락의사를 기 전달하였고, 4~5월 중 수락서 제출 및 제도 적용 예정

** 제작사 및 브랜드는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제작자로 등록하여 제원통보를 실시하는 기준임

- 한편, 소비자는 신차(1년, 2만km 이하)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되는 등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의 요건*을 충족하는 경우, 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·환불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,

< 자동차 교환·환불 요건 >

- i) 하자발생 시 신차로의 교환·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에서 인도 후 1년 이내(또는 주행거리 2만km) 이내에 발생한 하자로서,
- ii) 하자로 인해 안전 우려, 경제적 가치 훼손 또는 사용이 곤란하고,
- iii) 중대한 하자는 2회, 일반 하자는 3회 수리하고도 하자가 재발되거나,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

-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 사무국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리콜 센터(www.car.go.kr, 080-357-2500)에서 문의 및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* (주소) 경기도 화성시 송산면 삼존로 200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원회 사무국

< 관련 보도내용 (동아일보, 4.19) >

- ◆ “美中日은 시행중인데.. 수입차 업체, 한국형 레몬법 ‘패싱’ 왜?”
 - 수입차 업체의 40%가 레몬법을 수용하고 있지 않아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정송이 사무관(☎ 044-201-38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